

의안번호	2205265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4.12.19.
추계번호	24E27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3,89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조 1,114억원(연평균 4,2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3,898	-4,054	-4,216	-4,385	-4,560	-21,114	-4,223

※ 본 추계결과는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안)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이동통신서비스 요금</u>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미혼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요금: 10% / 그 외: 6% - (공제액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미혼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요금: 6만원 / 그 외: 3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의4제5항(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
 -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에 실시되므로 2024년 사용분부터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징수시점을 반영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지급하고 있는 이동통신비를 휴대폰 사용자(본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그 외)별로 구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이동통신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 개정안은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이동통신비는 전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가정
 - 추계에 활용한 재정패널조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는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¹⁾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자료로 근로소득자의 연간 이동통신비를 추정하여 추계에 활용
-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1)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비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1년 귀속)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수 및 1인당 평균 이동통신비 사용료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근로소득자를 총급여규모별로 구분하고 이중 이동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 비율을 국세통계연보(2022년 귀속)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에 곱해 총급여규모별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수 추정²⁾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
 - 개인의 연간 이동통신비 사용료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단위로 배분하여 추정
 - 가구별로 가구 총 근로소득에서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동 비율을 가구 단위 통신비에 곱해 가구 통신비를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별로 배분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³⁾
- 총급여규모별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국세청 제출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중 20세 이하 미혼자녀를 위하여 이

2) 재정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8,784 가구) 중 휴대전화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6,151 가구)의 비율은 약 70%인 것으로 조사됨

3)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동통신비를 지출한 인원 추정

-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수에 「국세통계연보」 상 총급여규모별 근로소득자 인원에서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출산·입양공제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 미혼자녀를 위하여 이동통신비를 지출한 인원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추정치)에 적용 대상자 수(추정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연도 세수효과 추계

- 총급여규모별 1인당 평균 이동통신비(추정치)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총급여 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정
 - 미혼자녀를 위하여 이동통신비를 지출한 인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이동통신비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6%, 한도 3만원) 외 추가로 미혼자녀 1명을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비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10%, 한도 6만원) 적용
-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에 기본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기본공제 적용 인원(결정세액 있는 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향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4.0%)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2) 추계 결과

-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3,6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4.0%)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2]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본인에 대한 이동통신비 공제 적용인원 대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총급여 인원 ¹⁾ A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 ²⁾ B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 ³⁾ C	미혼자녀공제 미적용인원 D= C×(A-B)/A	연평균 1인당 이동통신비 ⁴⁾ E	1인당 세액공제금액 ⁵⁾ 본인공제분(F) =min(E×6%, 0.03)	1인당 결정세액 ⁶⁾ G	세수효과 H= -min(F, G)×D
합 계	13,632,342	2,095,411	9,291,275	7,890,326	—	—	—	-234,394
1천만 이하	13	0	9	9	0.50	0.03	0.8	—
1.5천만 이하	177,969	0	123,022	123,022	0.79	0.03	0.01	-1,376
2천만 이하	824,105	259	619,022	618,828	0.83	0.03	0.1	-18,565
3천만 이하	2,894,922	21,798	1,968,860	1,954,035	0.93	0.03	0.2	-58,621
4천만 이하	2,314,031	92,373	1,654,014	1,587,988	1.07	0.03	0.6	-47,640
4.5천만 이하	983,247	87,509	648,314	590,614	1.14	0.03	1.1	-17,718
5천만 이하	859,585	112,313	576,777	501,415	1.31	0.03	1.5	-15,042
6천만 이하	1,397,685	272,508	944,660	760,479	1.23	0.03	2.2	-22,814
8천만 이하	1,806,448	570,283	1,110,713	760,069	1.41	0.03	3.8	-22,802
1억 이하	1,058,411	390,548	690,852	435,932	1.61	0.03	7.2	-13,078
2억 이하	1,146,940	480,430	827,519	480,888	1.61	0.03	17.4	-14,427
3억 이하	107,365	45,577	77,464	44,580	1.98	0.03	53.2	-1,337
5억 이하	41,555	15,199	29,982	19,016	1.98	0.03	102.3	-570
10억 이하	15,243	5,124	15,243	10,119	1.98	0.03	213.3	-304
10억 초과	4,823	1,490	4,823	3,333	1.98	0.03	804.9	-100

주: 1) 2022귀속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인원 수

2) 2022귀속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제외한 자녀기본세액공제 신청인원(국세청 제출자료)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A)에 곱하여 추정, 다만,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1억 초과 2억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10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4)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2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5)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공제율 6%, 한도액 3만원)

6) 2022귀속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본인+미혼자녀에 대한 이동통신비 공제 적용인원 대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총급여 인원 ¹⁾ A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 ²⁾ B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 ³⁾ C	미혼자녀공제 적용인원 D=C×(B/A)	연평균 1인당 이동통신비 ⁴⁾ E	1인당 세액공제금액 ⁵⁾			1인당 결정세액 ⁶⁾ G	세수효과 H= -min(F, G)×D
						본인공제분 =min(E×6%, 0.03)	자녀공제분 =min(E×10%, 0.06)	계 (F)		
합 계	13,632,342	2,095,411	9,291,275	1,400,948	-	-	-	-	-	-126,021
1천만 이하	13	0	9	0	0.50	-	-	-	0.8	-
1.5천만 이하	177,969	0	123,022	0	0.79	-	-	-	0.01	-
2천만 이하	824,105	259	619,022	195	0.83	0.03	0.05	0.08	0.1	-13
3천만 이하	2,894,922	21,798	1,968,860	14,825	0.93	0.03	0.06	0.09	0.2	-1,275
4천만 이하	2,314,031	92,373	1,654,014	66,026	1.07	0.03	0.06	0.09	0.6	-5,942
4.5천만 이하	983,247	87,509	648,314	57,700	1.14	0.03	0.06	0.09	1.1	-5,193
5천만 이하	859,585	112,313	576,777	75,361	1.31	0.03	0.06	0.09	1.5	-6,783
6천만 이하	1,397,685	272,508	944,660	184,181	1.23	0.03	0.06	0.09	2.2	-16,576
8천만 이하	1,806,448	570,283	1,110,713	350,644	1.41	0.03	0.06	0.09	3.8	-31,558
1억 이하	1,058,411	390,548	690,852	254,921	1.61	0.03	0.06	0.09	7.2	-22,943
2억 이하	1,146,940	480,430	827,519	346,631	1.61	0.03	0.06	0.09	17.4	-31,197
3억 이하	107,365	45,577	77,464	32,884	1.98	0.03	0.06	0.09	53.2	-2,960
5억 이하	41,555	15,199	29,982	10,966	1.98	0.03	0.06	0.09	102.3	-987
10억 이하	15,243	5,124	15,243	5,124	1.98	0.03	0.06	0.09	213.3	-461
10억 초과	4,823	1,490	4,823	1,490	1.98	0.03	0.06	0.09	804.9	-134

주: 1) 2022귀속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인원 수

2) 2022귀속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제외한 자녀기본세액공제 신청인원(국세청 제출자료)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A)에 곱하여 추정, 다만,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1억 초과 2억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10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4)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2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5)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공제율 6%, 한도액 3만원) + 미혼자녀(1명 가정)를 위하여 지출한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공제율 10%, 한도액 6만원)

6) 2022귀속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기준 세수효과에 최근 3년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적용하고 소득세수 징수시점을 반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 3,89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조 1,114억원(연평균 4,2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3,898	-4,054	-4,216	-4,385	-4,560	-21,114	-4,223

※ 본 추계결과는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정하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세수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